

파트타이머

○파트타이머란

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통상 노동자보다도 짧은 노동자를 말합니다.

파트타이머에도 조동관계법률이 통상노동자와 같이 적용됩니다.

노동보험,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노재보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(대응언어:중국어) 0570-001-702

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(대응언어:베트남어) 079-224-8181

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(다국어 대응)

<https://www.check-roudou.mhlw.go.jp/soudan/foreigner.html>

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-26-3733

※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